
일본의 건강검진제도 조사

2019. 1.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일본의 건강검진 수가체계(현황) 및 최근동향 파악

□ 과제명

- 국가 건강검진 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출장기간

- 2018년 12월 9일 (일) ~ 2018년 12월 12일 (수) *3박 4일

□ 출장지역

- 일본 도쿄

□ 출장자

- 여나금 부연구위원, 오수진 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지역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습득사항
2018.12.10. (월)	일본/ 도쿄	일본의사회	Arakawa, Hayashi, Taki, Tsukamo, Yoshida Sumito	-건강검진제도 주요 현황 등 조사
	일본/ 도쿄	건강보험조합연합회 보건부	Komtsubara Yusuke, Haruki Takumi, Sakurazawa Masahiro, Tozima yuki 등	-건강검진제도 현황 및 계약 방식 조사
2018.12.11. (화)	일본/ 도쿄	후생노동성	Niki Shinji, Tochiya Mayu, Shiozaki Takayuki, Nakashima Chisato, Shimizu Yoshitaka	-건강검진제도 및 비용 산정방식 등 조사
	일본/ 도쿄	국립보건의료과학원	Hukushima, Nakada Kensei, Tkahsashi, Sone, Hukuda, Yokoyama	-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 내용 조사

2 세부 내용

◎ 일본의사회

- (방문일시) 2018년 12월 10일 (월) 12:30~14:00
- (주요안건) 건강검진제도 주요 현황 등 조사
- (면담자) Arakawa(건강의료제2과장), Hayashi(지역의료제2과계장), Taki(보건 의료부장), Tsukamo(보건의료부 의료보험과 주사), Yoshida Sumito(총합정책 연구기구 수석연구위원) 등

가. 건강검진제도 개요

영유아기 (0-6세)	취학기 (-18세)	청년기 (-39세)	장년·중년기 (-64세)	노령기 (-74세)	노령기 2 (75세 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시정촌) ※법정 1세6개월 아동, 3세 아동	학교건강검진 (취학시:시정촌 교육위원회 취학시 이외:학교)	고령자의료 확보법⇒	특정건강검진(보험자)		후기고령자 건강검진 (광역연합)
		건강증진법⇒	건강증진사업에서의 각종 건강검진(시정촌)		
		노동안전위생법 ⇒	정기건강검진(사업자·학교)		
		암검진			
		건강증진사업(시정촌)(위·대장·폐·유방)			
		건강증진사업(시정촌)(자궁경) ※20세-			
		직역·인간도크(사업자·개인)			

나.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개요

□ 영유아 건강검진(법정) 항목

- 체중, 신장, 머리둘레, 눈 이상, 귀의 이상은 공통
- 1세 6개월 건강검진에서는 가슴둘레, 영양상태(모유에 관한 사항)에 중점

구분	임신	출산	유아	유아		
보건 사업	←임신건강검진→		←산모건강검진→			
	임신의 신고, 모자보건 수첩 교부	모친학급·양친학급	보건사·조산사 등에 의한 방문지도 등	저출생체중아동의 신고	신생아 방문사업	영유아가 정전세대 방문사업 (안녕아기 사업)
					1세6개월 아동건강 검진	3세 아동건강 검진
	←예방접종→					
	←식육 등 추진사업→					
	미숙아의 양육지도, 만성질환아동의 요육지도, 아동의 사고예방강화사업					
의료 대책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고도의료의제공→					
	불임에 고민하는 분에 대한 특정치료 지원사업	(주산기의료네트워크)	(소아구급의료체계 정비)			
		미숙아양육시설				
		소아만성특정질환의료비의 지급→				
		아동의 마음의 진료네트워크 사업				
←연구사업→						
←건강부모자녀 21의 추진→						

다. 성인 건강검진제도 개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이 중 노동자	기타
-39세	의료보험 각법(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대상자】피보험자·피부양자 【실시주체】보험자<노력의무>	노동안전위생법 【대상자】상시 고용하는 노동자 ※노동자에게도 수진 의무 있음 【실시주체】사업자<의무> ※일정한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	건강증진법 【대상자】주민(생활보호수급자 등 포함)
40-74세	고령자의료확보법 【대상자】가입자 【실시주체】보험자<의무>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한 사업자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건강검진의 수진을 우선한다. 사업자건강검진의 항목은 특정건강검진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한 사업자건강검진의 결과를, 특정건강검진의 결과로써 이용 가능	【실시주체】시정촌<노력의무> 【종류】 · 치주질환검진 · 골조소증검진 · 간염바이러스검진 · 암검진 · 고령자의료확보법에 근거한 특정건강검진의 비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보건지도
75세	고령자의료확보법 【대상자】피보험자 【실시주체】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노력의무>		
치주질환검진, 골조소증검진, 간염바이러스검진, 암검진	보험자 및 사업주가 임의로 실시·지원		건강증진법 【대상자】일정연령이상 주민 【암검진의 종류】위암검진, 자궁경암검진, 폐암검진, 유방암검진, 대장암검진

1) 건강검진별 대상연령

	40세	45	50	55	60	65	70	75	80	85		
고령자의 료확보법 (실시주체· 보험자)	시정촌국보: 국보인간도크(임의:국보보건사업에서 일부부담)											
	시정촌국보: 특정건강검진(40-74세) ○기왕력, 자각증상의 유무, 신장, 체중 및 배둘레 측정, BMI, 혈압, 간기능											
	피용자보험: 특정건강검진(40-74세) ○기왕력, 자각증상·타각증상의 유무, 신장, 체중 및 배 둘레 측정, BMI, 혈압, 간기능, 혈중지질, 뇨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실시주체:광역연합 ↔		광역연합:후기고령 자보건사업에 의한 건강검진 (75세 이상:노력의무) ※특정건강검진도 동일 검사항목			
	피용자보험: 인간도크(임의:보건사업에서 일부부담)											
노동안전 위생법 (실시주체· 사업자)					↑특정건강검진에 대한 건강검진데이터의 제공		↑정년 퇴직					
	사업주: 일반건강검진 ○기왕력, 자각증상·타각증상의 유무, 신장, 체중 및 배 둘레 측정, 혈압, 혈색소량·적혈구수, 간기능, 혈중지 질, 뇨, 심전도						고령자의 건강검진내용과 실시체계의 개편을 검토					
						개호보험법 실시주체: 시정촌		시정촌:특정고령자의 파악(65세 이상) ○기본체크리스트(질문표) ○임의:생활기능평가(혈청알부 등)				
암대책 기본법 (실시주체· 사업자)	시정촌: 대책형 암검진 ○ 위암·폐암·대장암 검진(40세 이상) ○ 유방암 검진(40세 이상 여성) ○ 자궁암 검진(20세 이상 여성)											
건강증진법 (실시주체· 사업자)	시정촌 -치주질환검진(49, 50, 60, 60세에서 실시하는 주기 검진) -골조소증검진(40, 45, 50, 55, 60, 65, 70세의 여성에 대해 실시 하는 주기 검진) -간염바이러스검진(40, 45, 50, 55, 60, 65, 70세에서 실시하는 검진과 기타 주기 검진)											

◎ 건강보험조합연합회 보건부

- (방문일시) 2018년 12월 10일 (월) 15:00~17:00
- (주요안건) 건강검진제도 현황 및 계약방식 조사
- (면담자) Komtsubara Yusuke(보건부장), Haruki Takumi(보건부 보건사업팀 매니저), Sakurazawa Masahiro(보건부 보건사업팀 보건사), Tozima yuki 등

가. 임산부 건강검진

□ (근거) 모자보건법 제13조(발체)에 의하면 시정촌은 필요에 따라 임산부 또는 영아 혹은 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 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해야 함.

□ 임산부가 수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강검진 횟수('임신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2015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고시 제226호))

① 임신 초기부터 임신 23주(6월말)까지 : 1회/4주

② 임신 24주(7월)부터 임신 35주(제 9월말)까지 : 1회/2주

③ 임신 36주(10월) 이후 분만까지 : 1회/1주

(※ 위의 내용에 따라 수진한 경우, 수진횟수는 14회 정도)

나. 영유아 건강검진

□ (근거)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정촌은 1세 6개월 아동 및 3세 아동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유아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 또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해야 함.

□ 제12조 시정촌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됨.

- 만 1세 6개월을 넘어 만 2세에 이르지 않는 유아
- 만 3세를 넘어 만 4세에 이르지 않는 유아

□ 제13조 건강검진 외에, 시정촌은 필요에 따라 임산부 또는 영아 혹은 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 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해야 함.

1세 6개월 아동 건강검진	3세 아동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체발육 상황 ② 영양상태 ③ 척추 및 흉곽의 질병 및 이상의 유무 ④ 피부의 질병의 유무 ⑤ 치아 및 구강의 질병 및 이상의 유무 ⑤ 눈의 질병 및 이상의 유무 ⑥ 사지 운동장애의 유무 ⑦ 정신발달의 상황 ⑧ 언어장애의 유무 ⑨ 예방접종의 실시 상황 ⑩ 육아상 문제가 되는 사항 ⑪ 기타 질병 및 이상의 유무 ○ 수진인원수(수진율) 1,001,397명(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체발육 상황 ② 영양상태 ③ 척추 및 흉곽의 질병 및 이상의 유무 ④ 피부의 질병의 유무 ⑤ 눈의 질병 및 이상의 유무 ⑥ 귀, 코 및 인두의 질병 및 이상의 유무 ⑦ 치아 및 구강의 질병 및 이상의 유무 ⑧ 사지운동장애의 유무 ⑨ 정신발달의 상황 ⑩ 언어장애의 유무 ⑪ 예방접종의 실시상황 ⑫ 육아상 문제가 되는 사항 ⑬ 기타 질병 및 이상의 유무 ○ 수진인원수(수진율) 1,009,368명(92.9%)

다. 집합계약(계약방식)

- (개요) 건강검진·보건지도기관과 보험자가 집합해서 집단끼리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
- 이용수는 적지만, 건강보험조합의 개별 계약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고 있으며, safe net의 역할을 하고 있음.

<집합계약 A와 B의 비교 >

구분		A타입	B타입
계약자		건강보험조합연합회	도도부현 대표보험자
계약처		대표건강검진기관단체(6개 단체) -일본인간도크학회/일본병원회 -전일본병원협회 -일본총합건강검진의학회 등	계약체결기관 -현의사회 -지구의사회 -집단건강검진기관 등
결재대행기관		사회보험진료보수기불기금	
계약기관수		약 2,300기관	약 45,800기관
단가		전국통일단가	계약에 의해 단가가 다름
		A와 B 양방 계약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에서 추진한 경우, 저렴한 단가로 결제가 이루어짐	
실시시기		통년 실시	기본적으로 통년 실시 (계약에 따라 실시시기에 제한 있음)
특정건강 검진	검사항목	특정건강검진항목 (HbA1c가 필수항목)	특정건강검진항목
	질문표	전체 22개 항목 실시 (실시기관으로 질문표를 준비)	복약력·흡연습관에 대해서는 필수 (실시기관으로 질문표를 준비)
	상세항목	'빈혈', '심전도', '안저', '혈청크레아티닌(eGFR)' 검사를 의사의 판단에 의해 실시	'빈혈', '심전도', '안저', '혈청크레아티닌(eGFR)' 검사를 의사의 판단에 의해 실시(실시기관에 의해 실시가능한 항목이 다름)

- (집합계약 A) 계약단가는 독점금지법의 관계상, 계약처인 건강보험조합연합회가 단가를 제시하고 건강검진단체의 합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2009년도 이후, 집합계약 A의 단가는 변동이 없음. 이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인상 요청이 있었지만, 소비세 인상만으로 대응해왔음.

- (1) 집합계약에 참가하는 보험자(도도부현내)의 가상 설정
- (2) 계약 대표자의 선정
- (3) 계약 대표자나 참가 보험자 등에 의한 계약조건(단가·내용)의 교섭·확정
- (4) 다른 도도부현의 보험자협의회에 계약 대표자명·실시기관 리스트·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배포해, 참가 희망의 보험자를 모집
- (5) 집합계약에 참가하는 보험자(다른 도도부현) 등록, 위임장의 정리
- (6) 계약서의 세트(쌍방의 리스트의 최종 확정)
- (7) 대행 기관(지불기금)으로의 계약 정보의 제출(기금에서의 등록)
- (8) 계약서의 조인

- (집합계약 B) 집합계약의 성립을 위한 조정 등은 모두 도도부현 단위의 보험자협의회에서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는 협의회에서 각 도도부현 내에 거점을 가진 보험자 중에서 계약 대표자를 선정해, 도도부현 내의 실기관과 계약서를 일제히 체결하는 단계를 거침.
- 각 보험자협의회에서 집합계약에 참가하는 보험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

(1) 각 시정촌(지역건강보험)에서의 실시기관의 확정

※ 시정촌(지역건강보험)에서의 계약 정보의 공개와 실시기관 조정(집합계약에 참가하는 기관 리스트의 정리 등)

(2) 집합계약에 참가하는 보험자(도도부현내)의 가상 설정

(3) 계약 대표자의 선정

(4) 계약 대표자나 참가 보험자 등에 의한 계약조건(단가·내용)의 교섭·확정

(5) 다른 도도부현의 보험자협의회에 계약 대표자명·실시기관 리스트·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배포해, 참가 희망의 보험자를 모집

(6) 집합계약에 참가하는 보험자(다른 도도부현) 등록, 위임장의 정리

(7) 계약서의 세트(쌍방의 리스트의 최종 확정)

(8) 대행 기관(지불기금)으로의 계약 정보의 제출(기금에서의 등록)

(9) 계약서의 조인

◎ 후생노동성

- (방문일시) 2018년 12월 11일 (화) 10:00~11:30
- (주요안건) 건강검진제도 및 비용 산정방식 등 조사
- (면담자) Niki Shinji(노동위생과 산업보건지원실장 보좌), Tochiya Mayu(건강과장 보좌), Shiozaki Takayuki(의료비적정화대책추진실 및 의료과), Nakashima Chisato(모자보건과 계장), Shimizu Yoshitaka(아동가정국)

가. 건강검진제도 개요

- 의료보험자 및 사업주는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시정촌은 건강증진법에 근거해, 특정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함.
- 시정촌은 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일정 연령의 주민을 대상으로 암검진 등의 각종 검진을 실시함(의료보험자 및 사업주는 임의로 실시).

< 일본의 건강검진제도 개요 >

구분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이 중 노동자	기타
16-39세	의료보험 각법(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대상자】피보험자·피부양자 【실시주체】보험자<노력의무>	노동안전위생법 【대상자】상시 고용하는 노동자 ※노동자에게도 수진의무 있음 【실시주체】사업자<의무> ※일정한 유해업무 종사 노동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	건강증진법 【대상자】주민(생활보호수급자 등 포함) 【실시주체】시정촌<노력의무>
40-74세	특정건강검진		【종류】 · 치주질환검진 · 골조소증검진 · 간염바이러스검진 · 암검진 · 고령자의료확보법에 근거한 특정건강검진의 비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보건지도
	고령자의료확보법 【대상자】가입자 【실시주체】보험자<의무>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한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건강검진의 수진을 우선한다. 사업자가 건강검진의 항목은 특정건강검진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한 사업자가 건강검진의 결과를, 특정건강검진의 결과로써 이용 가능	
75세	고령자의료확보법 【대상자】피보험자 【실시주체】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노력의무>		
치주질환검진, 골조소증검진, 간염바이러스검진, 암검진	보험자 및 사업주가 임의로 실시·지원		건강증진법 【대상자】일정연령이상 주민 【암검진의 종류】위암검진, 자궁경암검진, 폐암검진, 유방암검진, 대장암검진

나. 비용 산정방식 등

□ 건강검진비용 산정방식

- 특정검진의 경우 계약 단가는 지자체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 보험자에 따라 진료보수점수에 근거해 가격을 산정함.
- 보험자에게 검진에 대한 의무가 있어 국가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보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보험자-의료기관 간 계약 주기

- 특정검진과 기본검진은 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건강검진비용은 인상되지 않고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됨.

□ 건강검진 의료기관 질 관리(보상기전 등)

- 내·외부 지도에 대한 기준(보험자 지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은 관여하지 않고 있으나, 기준 충족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건강검진에 대한 계약을 해지시킴.

◎ 국립보건의료과학원

- (방문일시) 2018년 12월 11일 (화) 14:00~16:00
- (주요안건)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 내용 조사
- (면담자) Hukushima(원장), Nakada Kensei(국제협력계장), Tkahsashi(총괄 연구관), Sone(차장), Hukuda(의료복지서비스연구부장), Yokoyama(생애건강 연구부장)

가.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 개요

- (목적) 대사증후군(메타볼릭신드롬)에 착안한 것으로, 그 요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예비군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국립보건의료과학원에서는 후생노동성 건강국 총무과 보건지도실과 연계해, 2008년도부터 실시되는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에 관련해서,
 - ① 특정건강검진·보건지도 기관정보를 등록/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 ② 특정건강검진·보건지도의 연수정보를 등록/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 운용하고 있음.

□ 노인보건법의 일부 개정(2006. 6. 21. 시행)

개정전		개정후(2008년도부터)	
노인보건법	노인보건법의 목적 및 취지를 답습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고령자에 대한 보험급여 (노인각출금제도 등)		고령자에 대한 보험급여(후기고령자의료제도, 전기고령자의료재정제도), 의료비적정화의 추진	
시정촌에 의한 건강검진 등 보건사업← 정부부담에 의한 지원		시정촌 등 의료보험자에 의한 생활습관병건강검진·보건지도의 의무화←정부부담에 의한 지원 ※건보 피부양자도 대상	연계를 취해서 종합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작성, 시정촌에 의한 생활습관상담 등 실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건강증진법 등에 의해 즉시 계속해 실시	법적으로 연계를 담보 국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작성, 시정촌에 의한 생활습관상담 및 생활습관병 이외의 건강검진 등의 실시	건강증진을 추진
건강증진법 등		건강증진법 등	

□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제도의 실시(2008. 4. 11. 시행)

의료보험자에게 특정건강검진의 실시를 의무화	
↓	<p>대상자: 40-74세의 의료보험 가입자 약 5,600만명</p> <p>다만, 가입자가 노동안전위생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기타 법령에 근거해 실시되는 특정건강검진에 상당하는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받을 때,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어도 된다. (고령자의료확보법 제20조)</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용자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진율의 향상에 연결되는 구조 · 건강검진항목의 확대 = 사업자 등의 부담증가 → 항목 확대에 대한 과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출	
↓	
의료보험자에게 특정보건지도의 실시를 의무화	

□ 건강검진 규정 및 항목

구분	특정건강검진	정기건강검진	후기고령자건강검진	
건강검진 항목의 규정의 유무	있음 (후생노동성령)	있음 (노동안전위생법규칙)	있음 (사업실시요령)	
항 목	신체계측	신장 · 체중 · BMI	신장 · 체중 · 배둘레	신장 · 체중 · BMI
	문진 · 진찰	· 질문표(22개 항목), · 이학적검사(신체진찰)	· 기왕력, 업무력 조사 · 자각 및 타각증상 유무	· 기왕력, 업무력 조사 · 자각 및 타각증상 유무
	생리	· 혈압	· 시력, 청력, 혈압, 심전도	· 혈압
	생화학	· 지질검사(중성지방, HDL, LDL) · 간기능검사(GOT, GPT, γ-GTP) · 혈당검사(공복시, HbA1c 수시)	· 간기능 · 혈중지질 · 혈당	· 지질검사(중성지방, HDL, LDL) · 간기능검사(GOT, GPT, γ-GTP) · 혈당검사
	혈액	※상세항목으로써 빈혈검 사, 혈청크레아티닌(eGFR)	· 빈혈검사	※상세항목으로써 빈혈검 사, 혈청크레아티닌(eGFR)
	화상	※상세항목으로써 12개 유도심전도, 안저	· 흉부 ×선검사	※상세항목으로써 12개 유도심전도, 안저
	기타 (뇨 · 변 등)	· 뇨검사(뇨당, 뇨단백) ※일정기준 하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상세 건강검진을 실시	· 객담검사 · 뇨검사	· 뇨검사(뇨당, 뇨단백) ※일정기준 하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상세 건강검진을 실시

< 특정건강검진 실시율 추이(전체 보험자별, 2008~2016년) >

特定健診実施率の推移 (全保険者別) (H20~28年度)



< 특정보건지도 실시율 추이(전체 보험자별, 2008~2016년) >

特定保健指導実施率の推移 (全保険者別) (H20~28年度)

